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70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채현일 · 이재강 · 최혁진
이해식 · 양부남 · 허종식
조계원 · 이상식 · 차지호
노종면 · 김남근 · 강득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보안 위험의 분석·평가 및 대응
2.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관리 등을 위한 정보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통제에 필요한 조치
3.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공공데이터 유출의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
4.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접속기록, 입·출력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취득·보관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보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2조의2(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시스템 보안)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보안 위협의 분석·평가 및 대응</u> <u>2.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관리 등을 위한 정보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통제에 필요한 조치</u> <u>3.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공공데이터 유출의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u> <u>4.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접속 기록, 입·출력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취득·보관에 필요한 조치</u> <u>5. 그 밖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u>

	<u>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u> <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u> <u>치</u>
--	--